

IV. 모집학년과 지원자격

1 | 일반/학사 편입학 공통 사항

모집단위	공통 지원자격(공인영어성적)
일반대학 (연계교육 과정 행정학과 포함)	원서접수 마감일(2017. 1. 9.)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있는 자 [TOEIC, TEPS, TOEFL(iBT) 중 택 1] -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기관 TOEIC 및 TOEFL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교육과	TOEIC 800점, TEPS 641점, TOEFL(iBT) 91점 이상인 자(택 1)

※ 수의학과, 예체능계 및 연계 교육과정(행정학과 제외) 편입학 지원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함

2 | 일반 편입학(정원 내)

전적(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요건(나, 다, 라) 중 하나를 충족한 자

가. 모집학년 : 3학년

나.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년제 대학(학과)에서 2년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다. 국내·외 4년제 대학(방통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¹⁾) 이상 수료²⁾하고 6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원서 접수 개시일 현재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으나,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2005학년도 이전 삼척대학교 입학자는 지원 가능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하였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 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 전적(출신)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 학사 편입학(정원 외)

전적(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모집학년 : 3학년

나. 학사 학위 소지(예정)자(학점 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 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경우에 한함]

1)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취득학점은 인정), 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를 기준으로 함
2)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하며, 지원 시 전적대학의 2년(4학기) 이상 수료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하기 바람

4 농어촌지역 학생 편입학(정원 외)

가. 모집학년 : 3학년

나.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지역학생으로 입학한 자

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태백시 포함) 소재 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유형 I> 또는 <유형 II>에 해당하는 자

<유형 I> 학생이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II>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부모의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 요건 등을 심사

사유	부모에 해당하는 자
◦ 부모의 사망·실종	◦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부모의 이혼·재혼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 입양자	◦ 입양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체육고, 자율형 사립고는 제외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편입학(정원 외)

가. 모집학년 : 3학년

나.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우리대학의 2017학년도 대학 신입학(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6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학생 편입학(정원 외)

가. 모집학년 : 3학년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9호에 따라,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소재 대학 제외) 또는 산업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한 전문대학에서 해당 교육과정(이하 “연계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모두 이수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연계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 이후 해당 대학에 입학한 자

7 수의학과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공인영어 성적	TOEIC 850점, TEPS 700점, TOEFL(iBT) 99점 이상인 자(택 1)
선수과목 이수	일반(대학)화학 2과목, 일반(대학)생물학(생명과학) 2과목 이상 이수한 자